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채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채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납세서비스 혁신 및 세정 효율화 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과약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채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채납자 대응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7명(9급 1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성실신고 및 세원관리 등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을 신설하면서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및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은 정규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 등 업무를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업무 지원을 위해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직급상향(5급 2명)하고, 국세청 60년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5급 1명)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집행을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개발지원1팀과 개발지원2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1명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세무관서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으로,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제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을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서기관으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국제세원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 각”을 “국제세원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으로, “두며”를 “두되”로,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경정·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
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
3. 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회신에 관

한 사항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중 “징세과·법무”를 “징세과·채납분석과·법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액채납자의 관리(채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제외)

④ 채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2. 채납자 실태확인 지침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3. 생계 곤란형 채납자 복지연계 및 납부의무소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채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제8조제2항 중 “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를 “법인세과·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원천세”로, “보하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을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장려세제”를 “장려세제과·소득자료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납자 실태확인

제2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납자 실태확인

제31조제3항 중 “(5급 1명)은”을 “(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조직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세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3.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5.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873”을 “905”으로, 일반직 계 “869”를 “901”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서기관 “32”를 “34”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29”로, 행정사무관 “113”을 “12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6 중 세무주사 “230”을 “242”로, 전산주사 “43”을 “44”로, 세무주사보 “156”을 “165”로,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8”을 “9”로, 전산서기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08”을 “940”로, 일반직 계 “904”를 “936”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서기관 “32”를 “34”로, 서

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8”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사무관 “117”을 “12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6의2 중 세무주사 “237”을 “247”로, 전산주사 “42”를 “43”으로, 세무주사보 “161”을 “170”으로,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8”을 “9”로, 전산서기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9”를 “10”으로, 세무주사 “16”을 “15”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6”을 “25”로, 일반직 계 “26”을 “25”로, 운전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9,874”를 “20,111”로, 일반직 계 “19,874”를 “20,111”로, 세무주사 “4,504”를 “4,582”로, 세무주사보 “4,480”을 “4,566”로, 세무서기 “5,221”을 “5,267”로, 세무서기보 “3,281”을 “3,311”으로, 운전서기보 “158”을 “157”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45”를 “244”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9,979”를 “20,216”로, 일반직 계 “19,979”를 “20,216”로, 행정사무관 “1,106”을 “1,107”로, 세무주사 “4,566”을 “4,643”로, 세무주사보 “4,483”을 “4,569”로, 세무서기 “5,239”를 “5,285”로, 세무서기보 “3,281”을 “3,311”로, 운전서기보 “158”을 “157”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45”를 “244”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1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세원담당관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징세법무국 채납분석과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법인납세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악의적 채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고액상습채납자 대응 강화(세무서)	57명 (7급 57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6)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세무서)	143명 (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7)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세무서)	53명 (6급 5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전산사무관	4
세무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세무서기	1

국세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5조 관련)

1. 제3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세무주사	3
2. 제3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세무주사	1
세무주사보	1
3. 제3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세무주사	9
세무주사보	8
4. 제3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세무주사	7
세무주사보	1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생략)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 -----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삭 제>
1. 인공지능 국세상담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3.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관리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생략)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u>국제세원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u> 각 1명을 두며, 국제세원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u>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 <u>국제세원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u> 각 ----- <u>두되</u>----- ----- <u>서기관</u>으로, <u>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u>은 <u>서기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③ ~ ⑥ (생략) <u><신설></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u>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국제조세관리관</u>을 보좌한다. 1. <u>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경정·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 검증 기준의 마련</u> 2. <u>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u> 3. <u>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회신에 관한 사항</u> 4. <u>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5. <u>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에 관한 사항</u>
제6조(징세법무국) ① (생략)	제6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징세법무국에 <u>징세과·법무과 및 법규과</u>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고액채납자의 관리</u> 5. ~ 8. (생략) <u><신설></u>	②----- <u>징세과·채납분석과·법무</u>-----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액채납자의 관리(채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제외)</u> 5.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⑤ (생략) 제8조(법인납세국) ① (생략) ②법인납세국에 <u>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u>	④ <u>채납분석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채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u> 2. <u>채납자 실태확인 지침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u> 3. <u>생계 곤란형 채납자 복지연계 및 납부의무소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4. <u>채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조(법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법인납세국에 <u>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u>	②----- <u>법인세과·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원천세과</u>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하고</u>,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u>보한다</u>. ③ (생 략) ④ <u>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⑤·⑥ (생 략)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 (생 략) ②복지세정관리단에 <u>장려세제</u> 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한다</u>. ③ (생 략) <u><신 설></u>	----- ----- <u>보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u> -----. 1.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려세제과·소득자료관리</u>-----.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득자료관리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u> 2. <u>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u> 3. <u>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u> 4. <u>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u> 5. <u>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6. <u>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u>	⑤ (생 략) 제21조의2(징세관) ① (생 략)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3조(징세송무국) ①·② (생 략)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삭 제 <u><신 설></u> 6. (생 략)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장 <u>평가대상 정원</u> 제34조(<u>평가대상 정원</u>) 국세청과	<u>관한 사항</u>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징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u>채납자 실태확인</u> 제23조(징세송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5. <u>채납자 실태확인</u> 6.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 제7장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34조(<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
---	--	---	---

그 소속기관에 두는 <u>평가대상</u>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1과 같다.	----- <u>평가대상 조</u> <u>직 및</u> ----- -.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소 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 로 보한다.	<삭 제>
②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 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 와 같다.	
<신 설>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부이 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 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 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세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3.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5.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 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1의2와 같다.
제35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 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 세청에 둔다.	제35조(한시정원) ① ----- ----- ----- ----- 20 28년 2월 28일-----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 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	② ----- ----- ----- ----- ----- 2028 년 2월 28일----- -----.

방세무관서에 둔다. ③ (생 략) <u><신 설></u>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u>채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채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u>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삭 제></u> <u><삭 제></u>	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분장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0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개발지원1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 ② ----- ----- ----- ----- ----- 개발지원2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 기획재정부령 제10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0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세정혁신 팀장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이 정보 화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공지능세 정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빅데이터센터장이 분장한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73	905	+32
일반직 계	869	901	+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2	+1
서기관	32	34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	8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29	-1
행정사무관	113	121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6</u>	<u>17</u>	+1
·	·	·	
·	·	·	
세무주사	<u>230</u>	<u>242</u>	+12
·	·	·	
·	·	·	
전산주사	<u>43</u>	<u>44</u>	+1
세무주사보	<u>156</u>	<u>165</u>	+9
·	·	·	
·	·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u>8</u>	<u>9</u>	+1
·	·	·	
전산서기	<u>34</u>	<u>33</u>	-1
·	·	·	
·	·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08</u>	<u>940</u>	+32
·	·	·	
·	·	·	
일반직 계	<u>904</u>	<u>936</u>	+32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2</u>	+1
서기관	<u>32</u>	<u>34</u>	+2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9</u>	<u>8</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1</u>	<u>30</u>	-1
·	·	·	
행정사무관	<u>117</u>	<u>127</u>	+1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6</u>	<u>17</u>	+1

.	.	.	
.	.	.	
세무주사	<u>237</u>	<u>247</u>	+10
.	.	.	
.	.	.	
전산주사	<u>42</u>	<u>43</u>	+1
.	.	.	
세무주사보	<u>161</u>	<u>170</u>	+9
.	.	.	
.	.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u>8</u>	<u>9</u>	+1
.	.	.	
전산서기	<u>34</u>	<u>33</u>	-1
.	.	.	
.	.	.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9</u>	<u>10</u>	+1
.	.	.	
세무주사	<u>16</u>	<u>15</u>	-1
.	.	.	
.	.	.	

[별표 8]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26</u>	.	<u>25</u>	-1
일반직 계	.		.	<u>26</u>	.	<u>25</u>	-1
	.		.		.		
운전서기보	.		.	<u>1</u>	.	<u>0</u>	-1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19,874</u>	.	<u>20,111</u>	+237
일반직 계	.		.	<u>19,874</u>	.	<u>20,111</u>	+237
	.		.		.		
세무주사	.		.	<u>4,504</u>	.	<u>4,582</u>	+78
	.		.		.		
세무주사보	.		.	<u>4,480</u>	.	<u>4,566</u>	+86
	.		.		.		
세무서기	.		.	<u>5,221</u>	.	<u>5,267</u>	+46
	.		.		.		
세무서기보	.		.	<u>3,281</u>	.	<u>3,311</u>	+30
	.		.		.		
	.		.		.		
운전서기보	.		.	<u>158</u>	.	<u>157</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		.	<u>14</u>	.	<u>1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45</u>	<u>244</u>	-1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979</u>	<u>20,216</u>	+237
일반직 계	<u>19,979</u>	<u>20,216</u>	+237
·	·	·	
·	·	·	
행정사무관	<u>1,106</u>	<u>1,107</u>	+1
·	·	·	
·	·	·	
세무주사	<u>4,566</u>	<u>4,643</u>	+77
·	·	·	
·	·	·	
세무주사보	<u>4,483</u>	<u>4,569</u>	+86
·	·	·	
·	·	·	
세무서기	<u>5,239</u>	<u>5,285</u>	+46
·	·	·	
·	·	·	
세무서기보	<u>3,281</u>	<u>3,311</u>	+30
·	·	·	

·	·	·	
운전서기보	<u>158</u>	<u>157</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4</u>	<u>1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245</u>	<u>244</u>	-1
·	·	·	